

# NEWSLETTER

October 2021

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

Data Privacy & Cybersecurity Group

## CONTACT



변호사 박광배

T: 02.772.4343  
E: [kwangbae.park@leeko.com](mailto:kwangbae.park@leeko.com)



변호사 고환경

T: 02.2191.3057  
E: [hwankyung.ko@leeko.com](mailto:hwankyung.ko@leeko.com)



변호사 이일신

T: 02.772.5982  
E: [ilshin.lee@leeko.com](mailto:ilshin.lee@leeko.com)

##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공포

2021. 9. 28.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및 정부의 체계적인 데이터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**데이터기본법**)이 통과되었습니다. 당초 조승래 의원 법률안(데이터 기본법안), 허은아 의원 법률안(「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안) 및 이영 의원 법률안(「데이터 산업 진흥법」안)이 발의되었으나, 이들 3건의 법률안이 통합·조정된 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.

데이터기본법은 전세계 최초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민간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, 유통 및 거래 촉진,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및 데이터 기반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.

특히 2020. 8. 5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시행된 후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,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후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디지털 뉴딜 정책, 특히 「데이터 댐」에 담을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·수집·가공하고, 5세대 이동통신(5G) 및 인공지능(AI)과 융합·활용하는 다양한 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보다 명확해 졌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

데이터기본법은 2021. 10. 19. 공포되어 2022. 4. 20.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기본법(대안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1. 데이터기본법 주요 내용

구분		내용
1. 총칙	(1) 목적 (제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</li> </ul>

구분		내용
1. 총칙	(2) 데이터의 정의 (제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</li> <li>- 데이터: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, 실험, 조사,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</li> <li>- 공공데이터: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</li> <li>- 민간데이터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</li> </ul>
	(3)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 (제4조, 제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</li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</li> </ul>
	(4)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의 설치 (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설치</li> </ul>
2. 데이터 생산·활용 및 보호	(1)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(제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</li> </ul>
	(2) 데이터 결합 촉진 (제1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</li> </ul>
	(3) 데이터 자산의 보호 (제1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 금지</li> </ul>
	(4)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(제1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,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 지원 가능</li> </ul>

구분		내용
3. 데이터 이용 활성화	(1)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(제1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 가능</li> <li>■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·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</li> </ul>
	(2) 데이터 이동의 촉진 (제1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</li> </ul>
	(3)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(제1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</li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가능</li> </ul>
4. 데이터 유통·거래 촉진	(1) 데이터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(제18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, 데이터 유통 및 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</li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·운영 가능</li> </ul>
	(2) 데이터 플랫폼지원 (제1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</li> </ul>
	(3) 표준계약서 (제2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,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 가능</li> </ul>
	(4)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(제2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 가능</li> <li>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 가능</li> </ul>
5. 데이터 산업의 기반 조성	(1)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(제2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공 가능</li> </ul>
	(2)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(제3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가 데이터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가능</li> </ul>
6. 분쟁조정	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(제3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</li> </ul>

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, 소송 등 분쟁 대응, 형사 사건 대리 뿐 아니라, 데이터 활용 사업과 관련한 자문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. 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내지 컨설팅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수신거부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

**Lee & KO** 법무법인(유) 광장

뉴스레터 더 보기

COVID-19 자료실

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(우 04532) | Tel: 02-772-4000 | Fax: 02-772-4001/2 | [www.leeko.com](http://www.leeko.com)